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 안<br>번 호 | 2621 |
|------------|------|

2025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이숙자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 II.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립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I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숙자 의원)

-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사립학교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등을 이유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적 지원정책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전면 개선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① 학교의 종류나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립학교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②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사업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③ 지원 항목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④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촉구함.

####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건의안은 2025년 3월 31일 이숙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21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건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1월 11일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1) 수업료 자율학교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 및 개요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와<sup>1)</sup> 같은법 제51조에<sup>2)</sup>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립학교 진흥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과 특수교육,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조례 제3조제1항은<sup>3)</sup> 각호에서 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기관을 ‘사립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제1호)’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2월 22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sup>4)</sup> 의결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대상을

---

1)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3)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4)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0호, 이숙자 의원 등 42명 발의, 2023.10.11. 발의)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구성된 것입니다.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감소로 학령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재정의 어려움이 해당 학교에 재학생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발의되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월 조례 개정·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합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등의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서도 여전히 해당 학교들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 계획」은<sup>5)</sup>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립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를 명시하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에서도<sup>6)</sup> 지원 제외 대상에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이하 “수업료 자율학교”)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별표 1]과<sup>7)</sup>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5)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24.3.), 「2024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 계획(안)」, 2쪽.

6)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3.6.),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2쪽.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비교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항에8) 근거하여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춰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 내 수업료 자율학교는 학교 설립 유형별로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자율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각종학교 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총 69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9)

○ 다만, 건의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학교에 목적사업비, 자연재해 예방 또는 피해시설 복구를 비롯한 예외적인 시설사업 예산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시설사업 중 수업료자율학교 지원 가능 대상10)

| 예외적 지원 대상                             | 내용                                                                                              |
|---------------------------------------|-------------------------------------------------------------------------------------------------|
| ① 자연재난(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해 지원 가능 | - 자연재난(재해) 범위<br>1)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또는 기타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8)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9)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4번(학교지원과 작성 자료) 회신 결과

10)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3.6.),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2쪽.

| 예외적 지원 대상                                                                                                       | 내용                                                                                                                   |
|-----------------------------------------------------------------------------------------------------------------|----------------------------------------------------------------------------------------------------------------------|
|                                                                                                                 | <p>이에 준하는 자연현상)</p> <p>2) 자연재난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심히 우려되어 시급히 조치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함)로 보고 확인된 사안</p>       |
| ② 재난 등 위해시설 중 1억 원 이상 소요 사업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20% 이상 대응투자 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학교법인의 수익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대응투자 가능 | <p>- 재난 등 위해시설 범위</p> <p>1)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보수보강</p> <p>2) 재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심히 우려되어 시급히 조치될 사안으로 본부로 보고 확인된 사안</p> |
| ③ 특별교부금 또는 외부재원에 한하여 시설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비 지원                                                                 | -                                                                                                                    |
| ④ 국가정책사업·안전관리사업(내진 보강·석면 해체·드라이비트 해소·샌드위치판넬 제거·정밀점검)에 대해 지원 가능                                                  | -                                                                                                                    |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등 수업료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예산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과 전자철판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원 등을 포함해 총 704억 8천 1백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이 중 298억 1천여만원, 전체 지원액의 약 42.3%은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으로, 법령상 의무 이행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수업료 자율학교에 관한 시설비 지원은 같은 기간 총 158억 여 원이 이뤄졌으며,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 등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비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표-2] 최근 3년간 수업료 자율학교 재정지원 현황(총괄)<sup>11)</sup>**

(단위 : 천원)

|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
| 금액                        | 26,393,823 | 31,600,436 | 12,487,022 | 70,481,281 |
| 사회통합전형 미충원<br>재정결손 지원액 제외 | 16,116,440 | 21,606,492 | 2,947,951  | 40,670,883 |

주1) 입학준비금, 무상급식비, 저소득층지원 등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한 수치임.

주2) 2023년과 2024년은 집행액이고, 2025년은 예산액 기준임.

**[표-3] 최근 3년간 수업료 자율학교 재정지원 현황(시설사업비)<sup>12)</sup>**

(단위 : 천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소계         |
|-------------------------|-----------|-----------|---------|------------|
| 안전관리(내진보강)              | 266,731   | 1,977,592 | -       | 2,244,323  |
| 안전관리(석면제거)              | 1,833,041 | 1,756,022 | -       | 3,589,063  |
| 안전관리(정밀점검)              | 610,974   | 561,436   | 23,461  | 1,195,871  |
| 자연재난(자연재해) 예방 및<br>피해복구 | 583,489   | -         | -       | 583,489    |
| 재난 등 위해시설 해소            | 1,985,983 | -         | -       | 1,985,983  |
| 바닥개선(특별교부금)             | -         | 148,000   | -       | 148,000    |
| 장애인편의시설(특별교부금)          | -         | 161,000   | -       | 161,000    |
| 창호개선(특별교부금)             | -         | 209,000   | -       | 209,000    |
|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 -         | 4,213,704 | 100,740 | 4,314,444  |
| 안전관리(샌드위치판넬제거)          | -         | 686,316   | 684,889 | 1,371,205  |
| 소계                      | 5,280,218 | 9,713,070 | 809,090 | 15,802,378 |

주) 2023년과 2024년은 집행액이고, 2025년은 예산액 기준임.

## 2)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 이러한 상황에서 동 건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수업료 자율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와 차별 없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수업료 자율학교의 시설사업비 지원 및 화장실·급식실·잔디운동장 조성 및 개·보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1)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4번(학교지원과 작성 자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임.

12)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2025.4.1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4번(학교지원과 작성 자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임.

- 특히, 건의안은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여건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학교 시설과 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적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동 건의안이 주장하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립학교 육성·진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정 지원은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하여 충분한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25조는<sup>13)</su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은<sup>14)</sup>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제43조는<sup>15)</su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등에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등에 대해 회계 상황 보고 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1991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3)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sup>16)</sup>

- 더 나아가 해당 판례는 사립학교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 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 교육에 있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 상기한 법령과 판례는 모두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이를 보장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공교육 투자의 일환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책무로서 시행되는 것이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 는 명제 아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수준과 범위 등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방침 등이 수업료 자율학교라는 사정만으로 시설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 2018년,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수년간 지속된 학생 결원과 이로 인해 누적된 재정적자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폐교를 통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sup>17)</sup>
- 해당 사안은 수업료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기조 장기화와

16)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사립학교법제55조제58조제1항제4호에관한위헌심판]

17) 유대근 기자(2018.1.1.), 저출산의 역습...서울 사립초 ‘기습 폐교’,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1017030> (검색일 2025-04-21)

학교에 대한 선호도 등이 학교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했고, 더 나아가 수업료 자율학교가 수업료 책정에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정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특히, 은혜초등학교의 사례는 저출생이라는 현상이 재정 악화로 이어져 학교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의 저출생 기조와 이로 인한 학교의 폐교 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저출생으로 인한 사립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2014년 45만 7,517명에서 2024년 36만 3,157명으로 9만 4,36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4년 대비 20.6%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내 사립유치원이 1999년 1,237개교에서 2024년 754개교로 1999년 대비 약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18)</sup>
  - 또한, 2023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장 회의를 소집하여 저출생 대비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는데,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 일자리, 재정 비효율화 등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19)</sup>

---

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 유초중등통계 > 연도별 학교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53&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53&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검색일 2025-04-22)

19) 박혜원 기자(2023.12.11.), [단독]초등입학 40만명 깨지자 교육청 칼 빼들었다…‘사립’ 폐교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277798> (검색일 2025-04-21)

[그림-1] 학생 수 변동현황<sup>20)</sup>



- 제시된 두 통계 등은 향후 사립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상급 학교, 중등 교육과정 단계의 학교들(중·고등학교 등)이 겪을 수 있는 경영상 문제를 예측하게 합니다.
-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와 통계지표는 사립학교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교육과정 내실화 등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 여건하에서 경영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림에도 특정 학교가 수업료 자율학교라는 이유로 시설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재정적 어려움 심화로 인한 시설 노후화, 학사 운영 부실 등의 피해는 학생과 학교 구성원 등이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자가 전제되는 노후 화장실·냉난방기 등의 개선, 노후 교사(校舍)의 증·개축, 미세먼지 위협에서 학생을 보호할

20)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울교육통계/시각화 > 연도별 통계 변동현황,  
[https://www.sen.go.kr/www/information/statistics/statistics\\_2/statistics\\_2024.jsp](https://www.sen.go.kr/www/information/statistics/statistics_2/statistics_2024.jsp) (검색일 2025-04-21)

체육관 건립, 조리종사원의 폐 질환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한 지하 급식실 및 학생 식당 해소 등에 있어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학교를 이유로 특정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 등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학교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구현’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상술한 상황을 종합할 때 동 건의안이 주장하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및 관련 지침 등의 재검토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 등을 갖추고 있는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집행기관 의견에 관한 검토

- 한편, 동 건의안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교육청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며, 재정 여건 악화로 기존 공사립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sup>21)</sup>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가 지방 교육행정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며, 보통교부금의 규모 산정에 있어 해당 교육지방행정기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1)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해당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과 단위,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업료 자율학교는 해당 시행령 [별표 1]에서 “교부금산정 기준학교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sup>22)</sup>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은 “학교”와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재정수요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시행령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교육행정비 등에서 “교부금산정기준학교”만을 기준으로 재정수요를 측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수요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비교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표-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상의 용어 구분

| “교부금산정기준학교”가 산정기준인 측정항목 예시 |                      |      | “학교”가 산정기준인 측정항목의 예시 |                 |        |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
| 2. 학교 운영비                  | 가. 학교 경비             | 학교 수 | 5. 교육 기관 등 시설비       | 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 건축 연면적 |
|                            | 나. 학급 경비             | 학급 수 |                      |                 |        |
|                            | 다. 학생 경비             | 학생 수 |                      | ...             | ...    |
|                            | 라. 삭제 <2020. 10.20.>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료 자율학교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통해 예측한 자체 재정 추계에서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sup>23)</sup>

- 다만, 해당 자료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2024년 고교 무상 교육 특례 규정 일몰과 2025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에 따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23) 서울시교육청(2025),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16~18쪽, 23~34쪽을 참조.

[표-5] 2025~2029년 중기 재정수입 총괄(예측)<sup>24)</sup>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연평균증가율 |
|---------|------------|------------|------------|------------|------------|------------|--------|
| 계       | 73,881,902 | 13,208,865 | 14,283,604 | 14,789,540 | 15,385,306 | 16,214,587 | 5.3    |
| 교육비특별회계 | 66,030,840 | 11,754,624 | 12,915,884 | 13,284,547 | 13,727,182 | 14,348,603 | 5.1    |
| 이전수입    | 64,267,033 | 11,593,535 | 12,515,737 | 12,884,639 | 13,326,329 | 13,946,793 | 4.7    |
| 자체수입    | 670,585    | 135,853    | 132,273    | 133,204    | 134,149    | 135,106    | △0.1   |
| 차입      | 0          | 0          | 0          | 0          | 0          | 0          | 0.0    |
| 기타      | 1,093,222  | 25,236     | 267,874    | 266,704    | 266,704    | 266,704    | 80.3   |
| 내부거래    | 0          | 0          | 0          | 0          | 0          | 0          | 0.0    |
| 기금수입    | 7,851,062  | 1,454,241  | 1,367,720  | 1,504,993  | 1,658,124  | 1,865,984  | 6.4    |

-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세입 여건 악화를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중기교육재정계획 상 수입 증가 예측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업료 자율학교의 재정지원이 일괄적으로 제한 되는 상황이 설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V.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건의안이 수업료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설비 지원 확대를 주장 하고 있는데, 건의안 내용을 실행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정지웅 의원)
-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이나 산정을 위한 데이터 제출 시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학교는 제외되고 있음.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 최근 3-4년간 1조원 이상 편성해온 시설사업비가 금년 5천억원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서울은 타 지역 대비 수업료 자율학교가 많은 상황인바, 당장 재정지원을 결정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없는

24) 위의 자료, 23쪽.

상황임.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Ⅵ. 토론요지 : 없음.

Ⅶ.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Ⅸ.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2023년 10월 11일 제안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2월 22일 가결됨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여전히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으며, 일부 사립 초등학교도 여전히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교육현장의 차별적 재정지원 정책은 부족한 재정 상태에 놓인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정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립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종류 및 운영 형태와 관계 없이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시설사업비 지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립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원칙적으로 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중요한 교육 정책의 일부이며, 국가 시책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운영 방식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 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과 같은 운영비 지원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시설안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 개선 및 안전 조치와 같은 필수적인 교육 지원이 특정 학교 유형에 따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화장실, 급식실 등 기본 생활시설은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며, 잔디 운동장 조성 및 개보수는 신체활동과 정서 함양에 중요한 요소다. 이처럼 학교 시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필수 생활 기반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 정책을 조속히 정비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